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구유재산(필동경로당 건물) 사용허가 처리(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)

1. 취업지원과-16719(2014.10.26.) 및 [재무과-18011(2014.12.3.) 구유재산 관리관 정정통보]호와 관련입니다.
2. 관내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 확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부족하여 자활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,
3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, 우리 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(사용허가)에 따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필동경로당 지하1층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신청하여 사용허가 처리하고
4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제2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.

처리내용

사용신청인		사용신청 재산	사용형태	사용기간	허가재산의 부과금	비 고
성 명	주 소					
중구지역 자활센터 (정대성)	세종대로2길 15, 1,2층 (남대문로5가,상공회건물)	필동경로당 지하 1층(98.61㎡)	무상사용	2014.12.04. ~ 2015.12.03.	사용인 부담	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

- ② 보장기관(지방자치단체)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 2.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임대
 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붙 임 :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. 끝.

주무관 **황수동** 자활지원팀장 **이수경** 취업지원과장 **서창수** 기획재정국장 **전결 12/05**
代장형태

협조자 주무관 **정무기** 재산관리팀장 **김주례** 재무과장 **代김주례**

시행 취업지원과-18764 (2014.12.5) 접수 ()
우 100-701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 별관3층 / http://www.junggu.seoul.kr
전화 3396-5382 /전송 02-3396-8692 / did1won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